

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,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

-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출자출연법」 개정안 3.13.(목), 국회 본회의 의결

< 주요 법률 개정사항 >

- (사업지역 확대)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 관할구역 외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
- (사업범위 확대)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에 신재생에너지, 내항 정기 여객운송 추가(현행 10종 → 개정 12종)
- (출자출연기관 공동설립) 지자체간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 및 타 지자체가 설립·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 출자출연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
- (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) 설립 지자체 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
- (회계부정 등 처벌) 회계업무 관계자의 회계부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및 강화,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청탁행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

□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일부개정안이 3월 13일(목)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□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지역투자 활성화 >

-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(사업지역 확대)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.

- 앞으로는,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.

* (예시) 골드시티 등 지자체간 협력 사업, 특별지자체(지방자치법 §199)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

- (당연적용사업 확대) 상하수도,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*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.

* (현행) 상하수도, 지방도로, 공공재건축 등 10종 → (개정) 신재생에너지, 해상여객운송 추가

-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.

-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운송 등을 지방공기업이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어,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(공동 출자·출연)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지방출자·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했다.

- 지방공기업법과 달리, 공동설립 근거가 없었던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지자체 간 출자·출연기관 공동 설립이 보다 편리해졌다.
- 또한 타 지자체가 설립·운영 중인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·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, 지자체 간 공동운영도 가능해진다.

< 회계관리 강화 >

-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.

- (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신설)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시행했으나,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·운영되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강화된다.

- (처벌근거 마련) 또한,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을 강화했으며,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하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.

< 기타 제도 개선사항 >

-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 조항과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신설했다.
- (타당성 검토 면제)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, 예외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다.
 -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등 유사한 사전절차*를 거쳤거나,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.
- * (면제 요건) 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, ②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, ③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, ④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하였거나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
- (출자법인 관리) 또한, 출자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, 이를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출자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.
- (사업별 예산제도 도입)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*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.
 - * (기존) 품목별 예산제도: 항 - 세항 ➡ (변경) 사업별 예산제도: 정책사업 - 단위사업
-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총괄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규웅 (044-205-3961)
		담당자	사무관	유해리 (044-205-3962)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대영 (044-205-3981)
		담당자	사무관	임문성 (044-205-3987)
		담당자	사무관	송진경 (044-205-3991)

참고

「지방공기업법」·「지방출자출연법」 법률 개정 주요 내용

법	구분	현행	개정안
지방 공기업법	사업지역 확대	■ 근거 조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지자체로 사업지역 확대 가능	■ 지자체간 상호합의 를 통해 사업지역 확대(\$49⑤)
	사업범위 확대	■ 지방공기업 당연적용사업 10종	■ 지방공기업 당연적용사업 12종 (\$2⑪⑫) - 신재생에너지, 내항 정기 여객운송 추가
	출자타당성 검토 면제	■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면제 규정 없음	■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면제 규정 신설 (\$54③) - 유사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, 소액일 경우(대통령령으로 규정)
	지방공사 출자법인 관리	■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관리 규정 없음	■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시, 지방공사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즉시보고 (\$54④)
	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	■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 대한 별도 운영 규정 없음	■ 설립 지자체 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 선임 (\$35의2)
	회계부정 등 처벌	■ 결산서 작성의무 위반을 제외한 기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없음	■ 부정청탁, 금품수수, 회계처리 원칙 위반 등 회계부정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 (\$81,\$82)
	사업별 예산제도 도입	■ 품목별 예산제도 사용	■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 (\$29)
지방 출자 출연법	출자출연기관 공동설립	■ 지자체간 공동 출자출연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	■ 지자체간*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\$4) * 출자·출연기관의 명칭, 위치, 사업내용 등을 규약으로 정함
	타 지자체가 설립·운영 중인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·출연	■ 타 지자체가 설립·운영 중인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·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	■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가 설립·운영 중인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추가 출자·출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 신설(\$4)

※ (기타) 타법 개정사항(공유재산법 \$10①→\$10의2①)을 반영하기 위한 조문 정비